#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879

발의연월일: 2021. 10. 18.

발 의 자: 추경호·김용판·서일준

정운천 • 윤창현 • 정진석

이종배 • 유의동 • 김예지

박덕흠 · 강기윤 의원

(11인)

#### 제안이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시중의 부동자금을 흡수하여 M&A를 활성화하고 기업의 구조개선에 필요한 자본을 효율적으로 공급하는 순기능을 수행하면서 질적·양적으로 성장해왔으나, 소수의 한정된 국내 기관투자자들의 자금을 유치하는 방식으로는 그 성장이 한계에 이른 것으로 보임. 그리고 글로벌 사모펀드들과 경쟁할 수 있는 국내대형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육성을 위해서는 외국 기관투자자들의 유치가 필요한 상황임.

그런데 현행 국내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적용되는 동업기업 과세특례제도는 일부 외국 연·기금 투자자에 한해서만 적용되고 있음. 이로 인해 외국의 연·기금 외 다른 기관투자자들의 경우는 국내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보다 국외 사모펀드를 통해 국내에 투자하려는 유인이 강하고 결국 제한적인 동업기업 과세특례제도는 국내 기

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중 요 요인으로 작용함.

이에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외국의 기관투자자들의 국내 원천소득을 일률적으로 배당소득으로 분류하지 않고, 글로벌사모펀드에 투자한 외국의 투자자들과 마찬가지로 소득의 원천별로과세되도록 하여 동업기업 과세특례제도의 차별을 해소하고 국내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수동적 동업자인 외국법인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배분받는 소 득을 배당소득이 아닌 소득원천별로 구분하여 과세하도록 함(안 제100 조의18제3항 단서). 법률 제 호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조의18제3항 단서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수동적동업자는"을 "수동적동업자와 외국법인인 수동적동업자는"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동업기업 소득금액 등의 계산 및 배분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0 조의18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 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개 정 안 혅 했 제100조의18(동업기업 소득금액 제100조의18(동업기업 소득금액 등의 계산 및 배분) 등의 계산 및 배분) ① ~ ② (생략)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동업자는 동업기업의 과세 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 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 세표준을 계산할 때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른 익금 또는 손금으 로 보아 계산한다. 다만, 수동 적동업자(「자본시장과 금융투 자업에 관한 법률 | 제9조제19 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 ----- 기관전용 사모 모집합투자기구의 수동적동업 집합투자기구-----자 중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에서 설립된 연금. 기금 등으로서 배분받는 소득 이 해당 국가에서 과세되지 아 니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동적동업자는 제외한다)의 경 수동적동업자와 외국법인인 수 우에는 배분받은 소득금액을 동적동업자는-----「소득세법」제17조제1항, 제11 9조제2호 및 「법인세법」 제9

3조제2호에 따른 소득으로 본	
다.	<b>.</b>
④ ~ ⑥ (생략)	④ ~ ⑥ (현행과 같음)